

2014. 04. 24(목)
제18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 2 차 본 회 의

조례안 심사 보고서

의안 번호	안 건 명	비고
1637	I.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38	II.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39	III. 충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무 위 원 회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조례안	제안일자	회부일자	상정일자	의결일자	제안설명
I.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04.15	2014.04.15	2014.04.23	2014.04.23	창조정책담당관
II.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04.15	2014.04.15	2014.04.23	2014.04.23	창조정책담당관
III. 충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04.15	2014.04.15	2014.04.23	2014.04.23	세정과장

2. 제안설명 요지

I.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과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 체계 개편에 따른 수급자 보장 · 관리팀 신설 필요
- 시정홍보 사진촬영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한 직종 조정 (전문경력관 ⇒ 일반임기제)

2. 주요내용

- 총 정원 : 1,305명(+11명)
 - 집행기관 : 1,275명 → 1,286명(+11)
 - 의회사무국 : 19명

○ 정원 조정내역

- 일반직 : 1,249명 → 1,260명(+11)

· 3급 ~ 5급 : 73명,

· 6급 이하 : 1,184명(+12),

· 전문경력관 : 3명(△1)

※ 사회복지 9급 +8, 세무 9급 +3, 일반임기제 행정8급 +1, 전문경력관 △1

- 기타(정무,별정,지도,연구) : 45명

II.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사업소의 도로명 주소를 관련 법령에 맞게 정정

2. 주요내용

○ 충주시박물관, 충주시조정경기장관리소의 도로명 주소 정정

· 충주시박물관

※ 충주시 중앙탑길 112-28 → 충주시 중앙탑면 중앙탑길 112-28

· 충주시 조정경기장관리소

※ 충주시 중앙탑길 150 → 충주시 중앙탑면 중앙탑길 150

III. 충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지방소득세를 부가세에서 독립세로 전환하고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로 조정하는 등 「지방세법」이 개정(2014.1.1)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조문 개편(안 제9조와 제10조)

-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 주민세 종업원분
- 나.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세율 규정(안 제11조)
 -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적용 세율 명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I. 총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개정조례안은
 - 사회복지인력 충원, 소득세 지방세 전환에 따른 인력보강 등 총액인건비 기준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총 정원은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른 세무직 3명, 맞춤형 급여 체계 개편에 따른 사회복지직 8명을 충원하여 총 11명이 증원된 1,305명이 되겠으며
 - 직급별 정원 조정내역은 6급이하 정원 12명을 증원하면서 시정홍보 사진촬영 및 제작, 구 사진자료 데이터 구축을 위해 일정자격을 갖춘 일반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경력관 1명을 감하였음.
- 본 개정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 지방의 독자적 과세체제로 개편되는 지방소득세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증가하는 수급자 보장·관리를 위한 팀을 신설하기 위해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총 정원 증가와 관련하여 총액인건비 기준과 정원 책정기준 내에서 운용되는 것이어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II.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조 1항(도로명주소의 구성 및 표기 방법 등)에 의거 충주시박물관과 조정경기장관리소의 주소를 도로명주소 표기 규정에 맞게 정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III. 충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 변경과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세율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에 부합되도록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 주요내용으로는

- 제9조 앞의 제4장 지방소득세 제1절 소득분을 삭제하고 제3장 주민세 중 제3절 종업원분을 신설하고 세율을 정하여 안 제9조로 하고
- 제10조를 삭제하고 제11조를 제10조로 하며
- 제11조를 신설하여 거주자의 종합소득과 종업원분을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해 개인 지방소득세로 바뀌 세율을 정하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설하고 세율을 정하는 것으로

○ 본 개정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그동안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징수하고 있는 지방소득세를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지방재정 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시행되는 법인세 소득세 공제·감면의 영향에서

벗어나 안정적 세수확보가 가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 시키고 지역여건과 산업특성을 고려한 공제, 감면 등 맞춤형 지방세정책을 통해 지역특화산업 육성이 가능한 사항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 등의 제반 규정에 부합하고 적법하다고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I.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 사진촬영기사는 몇 명입니까?
현재의 인력이 부족하다는 의미입니까?

【답변】

- 사진기사는 1명이며 지방기계운용주사가 2명 중 1명을 지난해 조례를 개정하여 전문경력관으로 직종을 변경하였음. 이번에 인력이 순증되는 것이 아니며 인력 선발을 도지사가 하므로 시의 인력수급 현실에 맞지않아 임기제 공무원으로 직종을 바꾼 것임.

【질의】

- 시의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불 때 인력 증원시 문제점은 없는지요?

【답변】

-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20% 안팎이며 인력의 순증을 최대한 억제하고 정부의 정책변화에 따른 필요한 최소인력만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Ⅱ.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없음”

Ⅲ. 충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없음”

5. 심사결과

- | | |
|-----------------------------|--------|
| (1)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원안가결 |
| (2)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원안가결 |
| (3) 충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원안가결 |